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신청 내용	변경공사에 관련되는 사용시설 등의 범위			
	사용 또는 저장 핵연료물질의 최대량			
	검사를 받으려는 일시 및 장소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장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 검사결과 조치·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 확인 신청인